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단 운영 제도의 개선

박 영 철 | 서울산업대학교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단장

산학협력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학협력의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I. 머리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한 성장 동력의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수행,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역할 수행 등과 같은 새로운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산학협력이 대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시행하였고, 산학협력단은 이 법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즉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며, 대학 내의 하부

조직이기는 하나 독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이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며, 아울러 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수입 및 지출을 대학의 일반회계 또는 교비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산학협력단은 이와 같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려진 것과 같이, 아직까지 산학협력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완전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역할 등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외부기관들이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의 일부로서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물론 정부, 지자체, 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학협력의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산학협력을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기업은 대학의 역량을 신뢰하고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산학협력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비하여 주어야 한다.

여기서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하여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조속히 정착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산학협력단 운영 제도의 개선 사항들을 열거한다. 우선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기 위하여 산학협력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현재 산학협력단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이의 소거를 위한 정책적 개선 사항, 기업의 역할 및 대학의 개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본다.

II. 산학협력단의 역할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기 위하여 우선 산학협력의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본다. 산학협력은 문자 그대로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상호 발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통합적인 협력 활동이며, 이와 같은 산학협력의 정의 및 범위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잘 나타나 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5에 의하면, “산학협력이

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총괄·수행하는 조직이며,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기능 및 역할은 대학의 순수 학문연구를 제외한 모든 기능, 즉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산업계를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산업계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III. 산학협력 활성화 저해 요인

지금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산학협력은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희망하는 수준, 기업이 기대하는 형태, 그리고 대학이 생각하는 형태의 산학협력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산학협력이 근원적으로 정부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성 부족, 대학과 기업 간의 목표와 문화의 차이, 상호 간의 이해 부족, 재정 부족, 결과의 불확실성과 효과의 장기성, 인센티브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03년 9월 제23회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 기본구조를

담은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전략에는 수요자중심 교육을 위하여 취업 연계형 맞춤형 교육, 현장 실습 및 인턴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 혁신형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사업화 대폭 확대, 기초 원천기술의 사업화 연계 강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을 위하여 1사 1전담 교수제 확산, 대학의 기술이전 및 중개기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기반 확충, 창업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과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함으로써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계약형 학과의 운영 등과 같은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전국에서 13개의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5월 다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대학원, 전문대학, 기능대학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의 실행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산학협력은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학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고 실행하는 법 및 제도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부족하여 대학이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법을 통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을 촉진시

키기 위한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2005년 2월 현재 전문대학을 포함하는 전국 358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 333개(93%)의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대학 산학협력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아직 많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독립법인으로서 설립되면서 해결되어야 하는 대학 내에서의 위상, 출연금,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법 및 제도가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저해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산업계의 산학협력에 대한 소극적 참여 및 투자 부족을 들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으로, 기업은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업은 대학에서 공급하는 인력의 기술적 수준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대학의 인력양성 분야가 산업계의 실질적 요구 분야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업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즉 대학이 과연 기업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기업을 위한 직업적 실용기술만을 교육하는 기관인가라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대학은 기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현장 적응력이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과 어떻게 협력하였으며, 또한 얼마만한 투자를 하였는가라고 묻고 있다. 즉 대학은 기업이 대학의 인력양성시스템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와 투자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세 번째 요

인으로 산학협력과 관련된 대학의 운영시스템 부족을 들 수 있다. 산학협력은 대단히 복잡적이며 전문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추진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운영시스템이 산학협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 및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학협력의 결과가 도출되기에는 어려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 많은 대학들이 교수 채용 및 업적 평가에서 산학협력 실적, 경력 및 성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미흡하게 반영되는 채용 및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학협력을 교수의 교육 및 연구에 부가하는 추가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성과 보상과 같은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및 제도의 준비는 산학협력단의
 위상 정립, 세금 감면 조항 신설,
 교비의 산학협력단 출연 허용,
 학교기업의 설립에 따른 일괄 회계 관리,
 분교에 대한 독자적 산학협력단의
 설립 허용, 산학협력전담교수제도의
 도입, 학교 보유 자산의 출연 제한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산학협력단의 위상과 역할 등이 보다 명확하게 명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나 명백히 대학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대학 내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립대학은 물론 일부

국·공립대학에서조차 대학 구성원들이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내부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산학협력단 업무에 대한 대학 행정부서와의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역할이 관련 법 또는 규정에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못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위상 및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설치령 등에 산학협력단을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의 세금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보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현재 산학협력단이 실제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을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세무적

IV. 산학협력단 운영 제도 개선

1. 법 및 제도의 정비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및 제도의 준비는 산학협력단의 위상 정립, 세금 감면 조항 신설, 교비의 산학협력단 출연 허용, 학교기업의 설립에 따른 일괄 회계 관리, 분교에 대한 독자적 산학협력단의 설립 허용, 산학협력전담교수제도의 도입, 학교 보유 자산의 출연 제한 폐지 등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

으로 어떤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가 관련 법 및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은 연구비의 집행, 학생 교육 등과 같이 대부분 대학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비영리사업이며, 이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기 이전 종래의 대학 연구처 등에서 추진하던 것들과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에 따른 이전경비(수수료) 및 보상금 등 산학협력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현재와 같이 영리기관으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종래의 대학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단의 교비 전입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령에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일반 회계 및 기성회계, 발전기금 등의 산학협력단 전입 허용범위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아 각 대학별 전입 범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산학협력단으로의 전입은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물론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된 것이기는 하나,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설립될 당시에 산학협력단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교비가 출연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제 기능

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사립대학에서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대응투자가 있는 경우, 대학이 투자한 대응자금은 현행 법령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전입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응자금은 산학협력단의 회계가 아닌 대학회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립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 교비를 최소한 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전입 범위 및 내용 등을 재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약에 의하여 명시된 산학협력사업의 대학 대응자금은 대학회계가 아닌 산학협력단 회계로 자금이 전출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산학협력단의 교비 전입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학교기업의 수입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국·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사립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된 학교기업의 회계 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하여 산학협력단 이외의 추가 행정조직을 필요하도록 하여 업무의 중복성이 발생될 수 있다. 만약 교육은 대학이 담당하고, 학교기업을 포함하는 산학협력사업은 산학협력단이 총괄 담당한다는 설립의 기본 취지를 적용시킬 수 있다면, 사립대학의 경우도 국립대학에서와 같이 학교기업의 운영이 산학협력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취득과 관련하여 현행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없

이 고유번호만을 부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학교기업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기업도 하나의 기업이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에 설립되는 학교기업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산학협력단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록 현행 법률에서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운영, 기술이전 사업 수행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의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이의 실현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 비율 역시 대단히 낮아 이 또한 산학협력단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이라도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사업(연구사업 포함)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기타 사항

관련 법령은 산학협력단장을 학교의 장으로부터 산학협력사업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

임받아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학협력단장을 계약의 주체로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설립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산학협력단의 성격 및 위상을 정부차원에서 정부 내 부처 간, 관련기관, 그리고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대학의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한시적이라도 산학협력단의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지원사업(연구사업 포함)의 간접비 비율을 상향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직원 대부분은 산학협력단이 독립 법인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신입사원이거나 또는 계약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직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대학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대학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부가 주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산학협력이 혁신주도형 경제도약을 주도하는 협력으로,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으로 정착되기 위한 개선 사항들을 산학협력단 운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기반으로 열거하여 보았다.

결국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대학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즉 산학협력은 대학이 대학교육체계를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체계로 전환할 때, 그리고 대학 시스템이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환될 때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은 정부 정책이 산학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수립되고 집행될 때, 그리고 관련 법 또는 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될 때 활성화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적

극적 참여 또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박영철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뉴멕시코주립대학교(The University of New Mexico)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뉴멕시코주립대학교 연구원 및 겸임교수,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산업대학교에서 대학원 교학부장, 연구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